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413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

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1. 개정이유

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공무원 지원제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일수 확대(안 제13조제4항 개정)
- 나. 자녀돌봄시간 신설(안 제13조제7항 신설)
- 다. 육아지원 특별휴가 부여 신설(안 제13조제8항 신설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☎ 02-450-7115, FAX: 02-411-1704, E-mail : jaehan0910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대표자명),

다. 주소 및 전화번호, 기타 참고사항 등